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각종 명칭 현행화

2.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위원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
- 나. 자원봉사 센터장의 명칭 일치(안 제9조, 안 제11조)
- 다.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규정 마련(안 제1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원봉사자”라 함은”을 ““자원봉사자”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원봉사단체”라 함은”을 ““자원봉사단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원봉사센터”라 함은”을 ““자원봉사센터”란”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 위원회”를 “위원회”로,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을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자나 자원봉사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으로, “새마을과장”을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장의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봉사센터”를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센터 장의 선임 및 해임)”을 “(센터장의 선임 및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센터 장”을 “센터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 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소장 1인”을 “센터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 자원봉사자”라 한다)에게 구미시(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	란	-----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		제4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제5조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나 자원봉사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새마을과장으로 한다. 단,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직위를 가진 위원이 변경될 시 그 직위와 보직을 받을 경우 위원으로 승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③-----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9조(센터 장의 선임 및 해임) ① 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선임기간에 불구하고 센터 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2. (생략)
3.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② (생략)

③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제8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

제9조(센터장의 선임 및 해임) ① 센터장-----

----- 사람 -----

----- 사람 -----
-----.

② 센터장-----

-----.

③-----
----- 센터 장----- 있다.

1. -----
----- 경우
2. (현행과 같음)
3. ----- 경우

제11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장 1명-----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⑦ (생략)

제19조(경력 인정 등) (생략)

<신설>

<신설>

④ (현행과 같음)

⑤ -----
----- 20명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력 인정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 자원봉사자”라 한다)에게 구미시(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자원봉사 진흥 시책의 일환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세입 감소(안 제1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자원봉사자들의 공공시설 이용률에 대해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개정안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향후 개별 공공시설 조례 개정 시 감면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세입 감소를 예측할 수 있음.

4. 작성자

- 새마을과 김민경(054-480-6805)

소관 실·과		새 마을 과
입 안 자	과 장	권 영 복
	담 당	임 홍 섭
	담 당 자	김 민 경 (480-6805)